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170

제출연월일: 2024. 7. 23.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안 제1조)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안 제2조)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안 제3조)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과태료) ① 공인회계사로서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 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제2조(「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 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제3조(「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한 자
- 3.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 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
- 5. 제93조를 위반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제 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 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 <u>(업무의 위탁)</u> ①・② (생	제5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략)	<u>위탁)</u>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금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
	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
	<u>다.</u>
제53조(벌칙) ① ~ ⑤ (생 략)	제53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
	승)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	6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u><삭 제></u>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56조(과태료) ① 공인회계사로
	서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u>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u>
	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u>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u> <u>과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벌칙) ① ~ ⑤ (생 략)	제39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
	승)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⑥</u>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는
<u> 처한다.</u>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1. 삭 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u>자</u>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u>자</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4.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u>자</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벌칙) ① (생 략)	제9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②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	<u><삭 제></u>
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u>7</u> .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	<삭 제>
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 한다.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1.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	2.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한 자
	3.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
	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5. 제93조를 위반한 자

[별지 제1호서식]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안 제1조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1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	제56조제1항(과			
	태료)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안 제2조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2	상호저축은행법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		
	제40조제3항(과	경구 또는 500인된 이야기 필급에 시아도록 아팠으며, 표프로는 2선		
	태료)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출석 또		
	안 제3조	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에		
3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벌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		
	칙)	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공인회계사법 제56조제1항(과 태료)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직무 관련 장부 작성, 사무소 비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자격사 전체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조사시에도 응답 진위 파악 애 로로 인해 형사처벌 사례 파악은 어려운 상황으로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움
2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제3항(과 태료)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차입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최근 5년 간 현재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으므로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움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제99조제3항(벌 칙)	* 경영관리 순응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및 위반여부 판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최근 5년간 현재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상세 사유

- 공인회계사법 제56조제1항(과태료) 직무 관련 장부 작성, 사무소 비치의 권고를 위해 이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개정 전에도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된 부분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을 것이며, 현행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직무 관련 장부 작성, 사무소 비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제3항(과태료) 차입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를 위해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해 개정 전에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을 것이며, 현행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없는 상황으로, 차입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 도록 권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벌칙) 경영관리 순응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및 위반여부 판단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개정 전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을 것이며, 현행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없는 상황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최미영	류성재	박민우
정형준	신장수	안창국
이정민	신장수	안창국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예슬	02-2100-2804	seul408@korea.kr